

개정 이유

헌법재판소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제28조제2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6.4.29.) ⇒ 동일 조항이 있는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개정 필요

- 지역금고 이사장 선거 등 의무위탁* 선거에는 「위탁선거법」이 적용되므로, 국회 개정 중인 「위탁선거법」 개정 문구를 반영한 시행규칙 개정 추진

* 「새마을금고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금고 이사장 선거는 관할 구·시·군선거위원회에 의무위탁

주요내용

-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 방법의 세부 사항을 정한 「별표1」 개정

< 「별표1」 개정 전·후 비교 >

조 문	현 행	개 정 안
3. 전화(문자 메시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컴퓨터 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가.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방법 2)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해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	가.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방법 2)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해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

참고사항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위탁선거법」 개정안(4건)은 (공통적으로 문자메시지에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견 및 「위탁선거법」 최종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문구 확정 예정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새마을금고 시행규칙 별표1(선거운동 방법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선거운동 방법 세부사항 3.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가.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방법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려는 후보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다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전화(문자메시지는 제외한다)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선거운동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다. 2)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해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선거운동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다.	[별표 1] 선거운동 방법 세부사항 3.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가.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방법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려는 후보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다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전화(문자메시지는 제외한다)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선거운동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다. 2)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해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선거운동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다.